

국제해양정세리포트

No.27

2024/8

발행인 김종덕 | 총괄 박수진 | 감수 최지연 | 담당 이서희·황수연

Email dokdo.oceanlaw@kmi.re.kr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문의 독도·해양규범연구실(051-797-4707)

Contents

국제기구

국제해사기구(IMO) 2

IMO 북극 해역에서의 중유 사용 및 선박 운송 금지조치 발효
해운 및 어업 기업에 GIA 가입 의사 표명 공개 요청

쿼드(Quad) 8

Quad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국제법원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10

ITLOS, 기후변화 관련 UNCLOS상의 국가 의무 명확화

지역별 동향

아시아 14

중국과 러시아 심해저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주장에 이의제기

베트남 남중국해 중부 해역을 대상으로 한 베트남의 200해리 이상 대륙붕 한계 확장 제출서

유럽 18

터키와 그리스 이탈리아 국적 선박의 지중해 분쟁해역 해저 광케이블 설치

행사안내

3개월 내 행사 계획 2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해양정세리포트는 최신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월간지로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707) 또는 이메일(dokdo.oceanlaw@km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해사기구

IMO

연구원 최 배 성

IMO 북극 해역에서의 중유 사용 및 선박 운송 금지조치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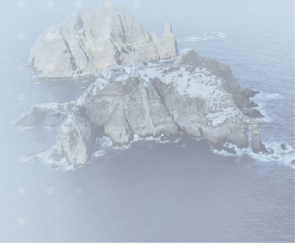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2021년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제76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를 통해 2024년 7월 1일부터 북극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중유(HFO, Heavy Fuel Oil)’¹⁾ 사용을 금지하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Marine Pollution Treaty) 부속서 I에 대한 개정안²⁾을 채택하였다. 이 개정안은 북극의 환경파괴 방지 및 생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유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개정안은 일부 면제사항³⁾을 포함하는 형태로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 중이며, 전면 금지 조치는 2029년 7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그림 1. ‘클린 북극 동맹’ 중유 금지령에 관한 전면적 시행 촉구



그림 출처:
Clean Arctic Alliance
(2024.7.1.)

- 1) 금지 조치 중유 사용 : 15°C에서 밀도가 900kg/m³ 이상 또는 50°C에서 동점도가 180mm²/s 이상인 오일의 연료 사용 및 운반을 포함
- 2) 2024년 7월 1일 이후 북극 해역에서 선박이 중유 연료를 사용하거나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항을 도입하기 위해 ‘MARPOL’ 부속서 I에 대한 개정안(43A 추가)을 채택
- 3)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수색 및 구조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유류 유출 대비 및 대응에 전념하는 선박’, ‘보호 연료 탱크를 갖춘 선박’ 및 ‘북극 연안에 근접한 국가’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면책권 발행 가능



하지만 ‘클린 북극 동맹(Clean Arctic Alliance)’에서는 이 조치에 대해 지리적 범위가 충분하지 않으며, 선박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Black Carbon)’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전면 발효 전까지 일시적인 면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허점이 많아 조치에 대한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중유는 전 세계 선박 연료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유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이 대기 중에 있는 동안 열을 끌어들이며 북극 지역 빙하의 해빙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한다. 클린 북극 동맹 외에도 여러 환경단체에서는 금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IMO 중유 사용 금지 조치로 인한 북극 인접 국가 반응

북극 해역에서의 중유 사용 금지 조치 발효로 인한 북극 인접국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캐나다의 경우 ‘교통부(Transport Canada)’에서 2026년 7월 1일까지 중유 사용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즉각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그린란드 주변 해역에 대한 면제를 발급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핀란드는 현재 IMO의 조치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올해 말 채택을 예정 중이라 전하고 있다. 반면, 노르웨이는 이미 2022년 1월 1일에 도입된 ‘스발바르환경법(Svalbard Environment Act)’⁴⁾에 따라 스발바르 제도 주변에서 중유 사용에 대한 강력한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북극 해안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아가 언제 금지 조치를 시행할지는 불분명하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 10월 IMO에 제출한 제출문에서 현 규정을 발효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오염에 관한 해상 조약에 대한 개정안을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현재 러시아는 조치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 국영 해운 그룹 ‘소브콤플로트(Sovcomflot)’는 당국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 원론적인 답변만 내고 있다. 더불어, 서방 제재를 받는 상황이 IMO의 중유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북극 인접국에서의 각국의 반응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2029년 전면 발효 전까지 중유 사용에 대한 예외 사항이 지속되어, 이에 대한

4) ‘스발바르환경법’ 82조는 스발바르군도에 입항하는 선박은 중유를 추진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지난 6월 중유를 싣고 스발바르 영해에서 운항한 아일랜드 선박에 대해 벌금을 부여했다. 스발바르환경법 82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첫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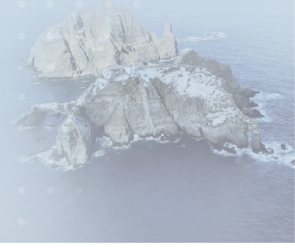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면 발효까지 북극 해역에서의 중유 사용 금지 조치가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

우선 국제적 관점에서 IMO의 북극 해역에서의 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중유 사용 금지 조치와 같은 국제적 규제를 위해 국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규제를 시행하고 강화하면서 발생하는 부담에 관해 규제를 준수하는 국가나 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혜택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북극 해역은 여러 국가가 연관된 지역이므로 국제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IMO에서 관련국이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내적 관점에서는 한국은 해운 강국으로 북극 해역에 대한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북극 해역을 포함한 국제 항로에서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선박의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제 규제와 연계된 기술 개발 및 투자 확대를 통해 한국 해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출처 : [1] 국제해사기구 홈페이지, <https://www.imo.org/en/MediaCentre/MeetingSummaries/Pages/MEPC76meetingsummary.aspx>(검색일: 2024.8.19.)
[2] Clean Arctic Alliance(2024.7.1.), <https://cleanarctic.org/2024/07/01/arctic-heavy-fuel-oil-ban-arctic-states-must-drop-climate-warming-loopholes/>(검색일: 2024.8.19.)
[3] 국제해사협력센터(KMC, Korea Maritime Cooperation Center) 홈페이지, https://www.imokorea.org/board/board.asp?B_ID=conference_result&depth1=committe&depth2=MEPC(검색일: 2024.08.19.)



국제해사기구

IMO

연구원 최 배 성

IMO, 해운 및 어업 기업에 GIA 가입 의사 표명 공개 요청

2024년 7월 17일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 및 어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글로벌 산업 연합(GIA: Marine Plastic Litter Global Industry Alliance)’¹⁾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향을 표명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 연합은 해양 및 어업 분야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기술 도입 및 대체 접근방식의 공통적인 장벽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IA는 IMO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및 생물오손(biofouling)을 포함하여 해운 및 어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다룰 예정이다.

GIA에는 선주, 항구, 어업 산업, 재활용 회사, 기술 및 데이터 제공자 등 광범위한 해양 이해 관계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GIA 회원들은 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하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산업 지침과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해결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연구 및 기타 활동을 통해 정기적으로 회동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은 MEPC 및 ‘런던협약·의정서(London Convention/Protocol)’와 같은 IMO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GIA’ 적임 대상

GIA 회원 자격은 ① 개인, 영리 목적의 상업적 회사 또는 기업(중소기업 포함) 및 협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기업체(단일 또는 다국적 관계없음), ② 상업적이나 사기업처럼 운영되는 국영 기업, ③ 기업에 의해 직접 자금 지원 및(또는) 관리되는 기업 재단 형태의 산업 회사로만 제한된다. 이외에 기업 협회 및 기타 단체(공공 부분 또는 학계)는 정식 회원으로의 자격은 없지만, 특정 업무나 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할 수 있다.

1) IMO의 OceanLitte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GloLitter 파트너십(GLP: GloLitter Partnerships)’ 프로젝트와 ‘지역 쓰레기 프로젝트(RegLitter: Regional Litter Project)’를 포함한 여러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 GloLitter 수립한 프로젝트를 GIA 기반으로 구축하고 대체할 예정이다. GloLitter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국, 기구 및 기업들이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술적 지원과 연구 협력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출처 분석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회원 자격을 고려하는 대상에게 ①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해결에 대한 헌신, ②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려는 의지, ③ 높은 수준의 헌신(재정·기술적 공헌) 3가지 사항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참여 의사 표명은 2024년 9월 2일까지 GloLitter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① GIA에 가입하려는 이유, ②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계획(있는 경우), ③ 잠재적인 기술 전문성 또는 공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세부 정보 ④ 연간 회원비 20,000달러 및 기타 고려사항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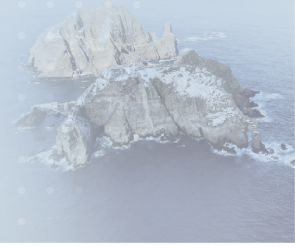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GloLitter와 GIA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해결을 위한 방향

GIA와 GloLitter는 궁극적으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지만,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다. GloLitter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구체적인 출처를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 단위로 접근하는 방식이라면, GIA는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기여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회원국의 재정 및 기술적 기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현재 GloLitter의 회원국은 총 30개국(주요 파트너국 10개, 파트너국 20개)²⁾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올해 9월 이후 GIA의 회원 구성은 GloLitter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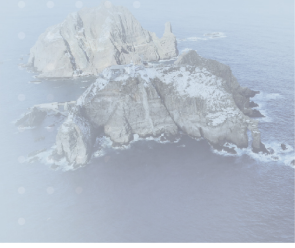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국제적 관점에서 GIA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여 국제적 협력 강화를 이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재정적 지원을 받아 자원 동원을 촉진해야 한다. 끝으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강화하여 이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과 조치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주요 파트너국(LPC: Lead Partner Countries) : 브라질,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인도, 인도네시아 공화국, 자메이카, 케냐, 마다가스카르, 나이지리아, 바누아투, 파트너국(PC: Partner Countries) : 아르헨티나, 카보베르데, 콜롬비아, 에콰도르, 감비아, 모잠비크, 나카라과, 파나마, 페루, 필리핀, 세네갈, 솔로몬 제도, 스리랑카, 수단, 탄자니아 연방 공화국,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베트남



IMO의 GIA에 대한 요청은 한국의 해운 및 수산업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IMO의 새로운 지침을 반영하여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국제협력 강화와 관련 산업의 책임 증대가 필요하다. 더불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연구기관이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와 기업은 친환경 기술 개발 및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글로벌 동향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들의 국제적 참여를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1] 국제해사기구 홈페이지, <https://www.imo.org/en/MediaCentre/HotTopics/Pages/marinelitter-default.aspx>(검색일: 2024.8.19.)
[2] GloLitter Partnerships 홈페이지, <https://glolitter.imo.org/countries>(검색일: 2024.8.19.)



쿼드

Quad

전문연구원 이 서 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지난 7월 29일에 개최된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회담³⁾에서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일본 외무장관,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 수브라마남 자이산카르(S.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은 사이버 공격 대응, 해양안보 보장, 허위 정보 대응과 같은 사안에 합의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4개국은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남중국해 분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군사화 및 강압적인 작전을 그 예로 제시하였다. 둘째, 4개국은 해양안전과 사이버 보안 강화, 동남아시아 국가 및 태평양 도서국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예컨대, 팔라우 보안 통신망 설치와 필리핀과 인도의 사이버 보안 역량 구축 지원이 있었다. 셋째, 4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인도양과 태평양의 해양 질서를 유지 및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개국은 공존과 공영의 국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보호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다섯째, 4개국은 해저케이블과 같은 인프라 개발을 통해 지역 연결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일본 외무장관은 해양영역 인식 제고를 위해 4개국이 파트너십을 인도양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미카와 요코는 불안정한 국제정세의 예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과 북한 미사일 개발을 제시하면서, 해양, 사이버, 우주 영역에서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파트너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협력은 항해의 자유, 상공비행, 합법적인 해상무역이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수브라마남 자이산카르(S.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은 자국과 중국

3) 쿼드(Quad) 또는 4자 안보 대화는 2007년부터 미국 · 일본 · 인도 · 호주 4개국이 정상회담, 정보교환 및 회원국 간 군사훈련을 통해 전략적인 대화로 발전된 국제기구이다.



간 영토분쟁이 있으나, 이번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으며, 본질적으로 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였다.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은 4개국이 무력이 아닌 규칙, 대화, 협력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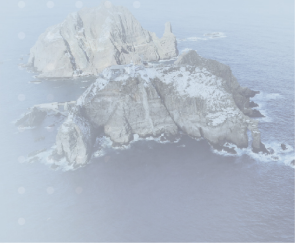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이번 쿼드 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은 미국 무기의 일본 생산을 강화함으로써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일본은 무기 수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지난 7월 29일에 개최된 쿼드 회담에서 4개국은 사이버 공격, 해양안보, 허위 정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단일 국가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먼저, 사이버 공격은 국가 간 긴장을 초래할 수 있기에 사이버 공격에 대항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은 각국의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해양안보 보장은 동아시아 지역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긴장 완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제법을 근거로 한 해양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허위 정보는 민주주의와 사회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으므로, 허위 정보에 대한 쿼드 국가들의 공동 대응은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쿼드 회담 합의는 지역 안보와 국제협력 강화, 글로벌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노력은 향후 국제관계의 협력 및 갈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1] AP(2024.7.29.), Blinken and envoys from Japan, Australia and India work to improve maritime safety in Asia-Pacific, <https://apnews.com/article/quad-japan-us-australia-india-foreign-ministers-2f08a35a2a22ec ee15686be7698cf758>(검색일: 2024.8.16.)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연구원 최 배 성

ITLOS, 기후변화 관련 UNCLOS상의 국가 의무 명확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상 국가의 구체적인 의무를 명확히 하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2022년 12월 12일, ‘기후변화 및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 위원회(COSIS: 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는 재판소에 다음 질문들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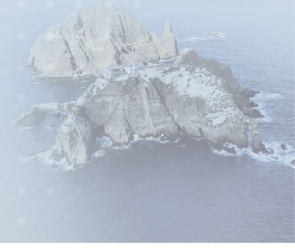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UNCLOS 당사국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의무는 무엇인가? (제12부¹⁾ 포함)

1.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양환경 오염, 즉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 온난화,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와 관련하여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감소 및 통제하기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의무는 무엇인가?
2. 해양 온난화,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과 관련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의무는 무엇인가?

이에 2024년 5월 21일, ITLOS는 COSIS가 제기한 질문에 관하여 153장 분량의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첫 번째 질문에 관해, 재판소는 대기 중으로의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해양환경 오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UNCLOS에 따라 각국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감소 및 통제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²⁾을 접목하기 위해 노력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조치의 범위와 내용은 국가의 역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ITLOS

1)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제192조~제237조 구성)’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 협약은 당사국들에 일반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의무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의무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협약 당사국들은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및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과학적 정보 및 관련 국제규범 및 기준에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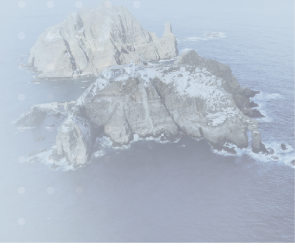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는 파리협정의 1.5°C 목표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감소 및 통제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상당한 주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양환경에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만큼, '상당한 주의' 의무의 기준은 '엄격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권고적 의견에 따르면, 국가는 관할권 또는 통제하에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환경에서도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감소 및 통제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재판소는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의 출처를 세 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①지상에서 발생한 오염, ②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 ③ 대기를 통한 오염' 국가는 세 가지 범주 모두와 관련하여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감소 및 통제하기 위한 법률과 규정을 채택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ITLOS는 각국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의무를 지닌다고 판단했다.

- 협력 : 각국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감소 및 통제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 규칙의 수립 및 정교화, 표준 및 권고 방식
 - 연구 촉진, 과학적 연구수행, 정보 및 자료 교환 장려
 - 규칙 및 표준에 관한 과학적 기준 수립
- 개발도상국 지원 : 기술적, 재정적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 활동 모니터링 및 보고서 발행 : 허가된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발행하며,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EI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를 수행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UNCLOS에 따른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 의무가 광범위하며 '해양환경에 관한 모든 형태의 피해나 위협을 포함한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권고적 의견에 따르면, 각국은 기후변화와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보호 및 보존할 구체적인 의무를 지니며, 해양환경이 훼손된 경우는 해양 서식지 및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ITLOS는 이 의무를 '상당한 주의'로 설명하며, 기후변화 영향과 해양 산성화로 인한 해양환경에 대한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의 높은 위험으로 인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권고적 의견에 따르면, 각국의 '구체적인 의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확대 적용된다.

- 희소하거나 취약한 생태계 보호 및 보존
- 기후변화와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받는 해양 생물 자원의 보존 조치
- 공유 자원의 보존 및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
- 비토착종으로 유입(기후변화 및 해양 산성화로 인한)으로 인한 오염 예방, 감소 및 통제 조치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감소 및 통제하는 맥락에서, '구체적인 의무'는 '일반적인 의무'와는 대조적으로 구체적이거나 특정화된 의무를 의미한다. 권고적 의견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해양 산성화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의 유해한 영향과 관련한 '구체적 의무'를 포함할 수 있다. 재판소는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하면서 '구체적'이라는 용어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다.

정책적 시사점

국제적 관점에서 ITLOS의 권고적 의견은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통합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파리협정 및 UNFCCC와 같은 국제 기후 협약의 실행을 강화하고, 각국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해양환경 변화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자료 공유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정책 결정과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

국내적 관점에서 UNCLOS와 ITLOS의 권고적 의견에 따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체제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과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후변화 영향에 대비한 종합적인 국가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환경 오염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력하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여 해양환경 보호 노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 [1]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lInfoReadPage.do;jsessionid=iQlt36qc56CalYhVValJXNWaL1B2ZYXpfiSLRu4RaVK0750alS6xdTum67fixr.eduweb_servlet_engine7?CTS_SEQ=12167&AST_SEQ=309&nationReadYn=Y&ETC=5&searchNtnl=UN(검색일: 2024.8.19.)
- [2] Earth Nagotiations Bulletin 홈페이지, <https://enb.iisd.org/topics/climate-change>(검색일: 2024.8.19.)
- [3] 국제해양법재판소 홈페이지(2022.12.12.), <https://www.itlos.org/en/main/cases/list-of-cases/request-for-an-advisory-opinion-submitted-by-the-commission-of-small-island-states-on-climate-change-and-international-law-request-for-advisory-opinion-submitted-to-the-tribunal/dossier-submitted-by-the-commission-of-small-island-states-on-climate-change-and-international-law/#c8484>(검색일: 2024.8.19.)



아시아

중국과 러시아

전문연구원 이 서 희

중국과 러시아, 심해저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주장에 이의제기

1982년에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자원, 해양환경 보호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 세계 해양문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 해안에서 최대 200해리(370km)까지 확장되는 배타적경제수역 내 모든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대륙붕 경계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절차를 통해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해저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길 원한다.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된 국제해저기구 회의에서 미국은 베링해(Bering Sea), 태평양, 대서양, 멕시코만(Atlantic Ocean and Gulf of Mexico) 대륙붕에 약 100만 km²를 추가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베링해의 경우, 태평양 북쪽에 있는 바다로 베링해협을 통해 북극해와 연결된다. 미국 해군사관학교 국제해양법학자인 제임스 크라스카(James Kraska) 교수는 미국의 대륙붕 연장 주장이 수백 마일 떨어진 심해저에 있는 리튬과 텔루륨과 같은 광물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러시아와 중국 대표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며,³⁾ 나아가 유엔해양법협약에 반한다고 강조하였다. 러시아 대표는 미국이 이 문제에 선택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중국 대표는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가 이 협약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이 일방적인 주장을 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중국 대표는 심해저 자원이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러시아와 중국은 북극을 포함한 국제사회 이슈에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대표는 대륙붕 주장에 대한 자국의 입장이 유엔해양법협약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주장은 이번 달 미국

3)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1990년대 유엔해양법협약에 비준하였다.



국방부가 발표한 새로운 북극 전략과도 관련이 있다. 2008년에 실시된 최근 미국의 지질조사에 따르면, 북극권 내부에는 약 900억 배럴의 미발견 석유와 1,670조 세제곱 피트(ft³)의 가스가 전기화에 필요한 주요 금속과 함께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추정치일 뿐이며 이 자원은 거의 탐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해 해상교통과 탐사가 확대됨에 따라,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는 북극해 지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미국은 알래스카 해안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를 처음으로 추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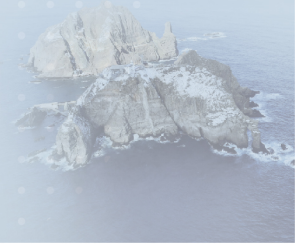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정책적 시사점

미국의 주장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반박은 국제법이 각국의 이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러시아와 중국은 자원개발에 대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강조하면서, 자원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중국 간 패권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심해저 자원을 둘러싼 미국, 러시아·중국의 갈등은 각국의 군사적인 영향력 확대와 연결될 수 있으며, 향후 국제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심해저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 [1] The Japan times(2024.7.30.), China and Russia challenge legality of new U.S. claims to seabed floor,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4/07/30/world/politics/china-russia-us-claims-seabed-floor/>(검색일: 2024.8.16.)

[2] RT(2024.7.31.), Russia and China challenge US claims to marine seabed - media, <https://www.rt.com/news/601906-russia-china-us-seabed-claims/>(검색일: 2024.8.16.)



아시아

베트남

전문연구원 이 서 희

남중국해 중부 해역을 대상으로 한 베트남의 200해리 이상 대륙붕 한계 확장 제출서

7월 17일 오전, 유엔 본부에서 베트남 상임대표인 당호양장(Dương Hoàng Giang) 대사와 외교부 대표단은 남중국해 중부해역에 대한 베트남의 대륙붕 한계 확장 제출서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같은 날, 베트남 외교부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서는 베트남이 남중국해에 접해있는 대륙국이자,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라고 하면서, 유엔해양법협약과 자연·지리적 조건에 따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하였다.

베트남이 남중국해 중부해역에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 한계를 제출한 것은 세 번째이다. 2009년 베트남은 두 건의 제출을 완료하였다. 2009년 5월에 베트남은 남중국해 중부와 북부해역에 대해 별도의 부분 제출서를, 남중국해 남부해역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와 공동 부분 제출서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019년 이후에는 남중국해 연안국들이 남중국해 중부 해역 대륙붕 확장에 관한 내용을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베트남은 이번 성명서에서 남중국해 중부해역에 대한 대륙붕 확장 한계에 관한 제출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⁴⁾ 아울러 베트남은 남중국해 중부해역 대륙붕 확장 제출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베트남과 관련 연안국 간 해양경계에 관한 문제를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는 구술서(note verbale)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다.

베트남은 국제법에 따라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제도에 대한 자국의 주권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정된 남중국해 해양수역에 관한 권리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보, 안전, 항행, 상공비행의 자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베트남은 국가 및

4)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8항은 연안국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정보를 공평한 지리적 배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2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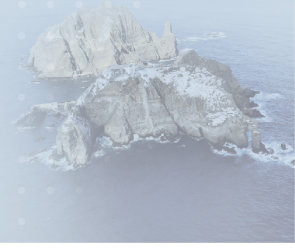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국제사회와 함께 베트남과 남중국해 연안국 사이에 있는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제도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책적 시사점

베트남이 남중국해 중부해역에 대한 대륙붕 한계 확장 내용을 제출한 것은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영토적 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베트남, 필리핀 등 남중국해 문제 관련 국가들의 대응 동향과 법적 논리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출처 : [1] Vietnam Law(2024.7.18.), Statemen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Viet Nam On Vietnam's Submission on the Limits of the Extended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in Respect of the Central Area of the East Sea, <https://vietnamlawmagazine.vn/statement-of-the-ministry-of-foreign-affairs-of-viet-nam-on-vietnams-submission-on-the-limits-of-the-extended-continental-shelf-beyond-200-nautical-miles-in-respect-of-the-central-area-of-the-east-sea-72167.html> (검색일: 2024.8.16.)

[2] Viet Nam News(2024.7.18.), Việt Nam presents sub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in respect of the Central Area of the East Sea, <https://vietnamnews.vn/politics-laws/1659467/viet-nam-presents-submission-on-the-limits-of-the-continental-shelf-beyond-200-nautical-miles-in-respect-of-the-central-area-of-the-east-sea.html>(검색일:2024.8.16.)



유럽

터키와 그리스

전문연구원 이 서 희

이탈리아 국적 선박의 지중해 분쟁해역 해저 광케이블 설치

터키와 그리스의 해저케이블 프로젝트

터키와 그리스 본토를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케이블인 메드노틸러스 (MedNautilus) 부설은 2010년경에 시작되었고 2012년에 완공되었다. 메드노틸러스는 지중해 중부 및 동부 국가를 연결하는 해저 통신 케이블 시스템이다.

그림 2. 메드노틸러스의 케이블 연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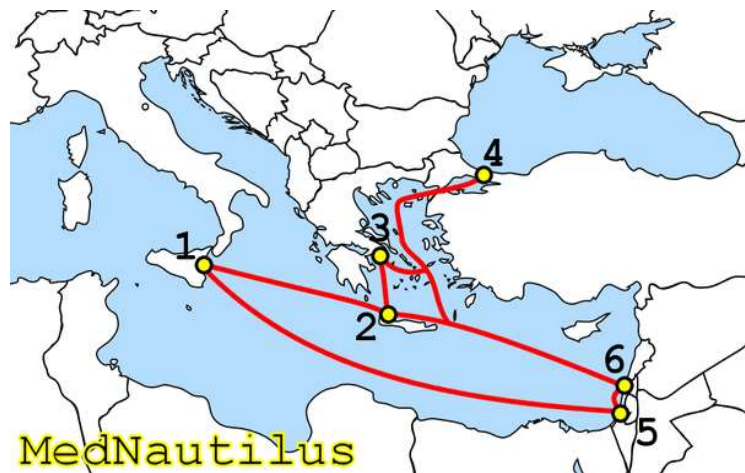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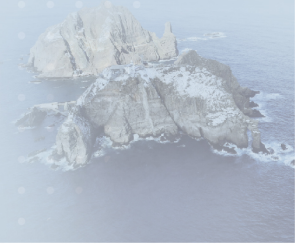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그림 출처: Wikipedia

메드노틸러스의 케이블 연결점은 다음과 같다.

1. 이탈리아 카타니아(Catania)와 시칠리아(Sicily)
2. 그리스 크레타 섬
3. 그리스 아테나
4. 터키 이스탄불
5. 이스라엘 텔아비브
6. 이스라엘 하이파



“블루-라만(Blue & Raman) 해저케이블 프로젝트”는 터키와 그리스를 케이블 연결점을 포함한다. 이 프로젝트는 구글이 2021년에 선언하였으며, 프로젝트명은 노벨상 수상자인 인도 물리학자 벤자타 라만(Venjata Raman)의 이름에서 빌려왔다. 총 6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인 블루-라만 케이블은 프랑스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지부티, 오만을 거쳐 인도까지 연결되는 대륙 간 광섬유 통신 케이블 시스템이다. 이 케이블은 인터넷 연결의 요충지로 널리 알려진 이집트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구글은 지정학적 이유로 블루-라만 해저케이블 프로젝트를 블루 해저케이블 시스템과 라만 해저케이블 시스템으로 분리하였다. 블루 해저케이블 시스템은 이스라엘,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터키 등 남유럽 지역으로 연결되며, 라만 해저케이블 시스템은 인도와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지부티, 오만 등 중동국가와 연결된다.

이탈리아 국적 선박의 해저 광케이블 설치로 인한 그리스와 터키의 대립

그리스 섬 일부는 터키 영토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져 있으며,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스와 터키는 오랜 기간 적대관계를 유지해왔고, 이 지역 해역 대부분을 누가 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해 분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로도스 남쪽과 크레타 섬 동쪽을 향해 중이었던 이탈리아 선박이 터키 인근 지중해 분쟁 해역에 해저 광케이블을 설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와 터키로부터 항해 허가를 발급받았다.

터키는 이탈리아 선박이 터키의 영해에서 허가 없이 운항했다고 주장하면서, 이탈리아 선박이 터키 대륙붕의 한 지역에서 조업하는 중이라고 주장하였다. 터키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터키의 북키프로스 점령(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은 유엔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터키는 “블루 홈랜드(Blue Homeland)” 전략을 내세우고 있으며,⁵⁾ 그 결과,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스는 이탈리아 선박이 자국 영해에서 합법적으로 운항하고 있었다고

5) 터키 해군의 고위 장교들은 2006년에 에게해와 동부 지중해에서 그리스 주권과 그리스 및 키프로스의 주권에 도전하는 광범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터키가 주장하고 방어해야 한다는 의미로 “블루 홈랜드(Blue Homeland)”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사용했다.



주장하였다. 그리스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하였고, 세비야 지도(Seville Map)에 따라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지중해 분쟁해역에 해저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터키와 그리스의 영토주권에 관한 논쟁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외교적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지중해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은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중동과 유럽 간의 관계에 미칠 영향 분석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출처 : [1] ekathimerini.com(2023.6.19.), Behind Turkey's 'Blue Homeland' doctrine, <https://www.ekathimerini.com/opinion/1213618/behind-turkeys-blue-homeland-doctrine/>(검색일: 2024.8.14.)

[2] Cable ship in Mediterranean causes tensions between Turkey and Greece(2024.7.05.), <https://www.datacenterdynamics.com/en/news/cable-ship-in-mediterranean-causes-tensions-between-turkey-and-greece/>(검색일:2024.8.14.)

[3] 내일신문(2022.11.09.), 인터넷케이블 요충 홍해를 보호하라, <https://www.naeil.com/news/read/441110>(검색일: 2024.8.14.)



3개월 내 행사계획

제34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 | 2024년 6월 10일 ~ 6월 14일 / 뉴욕

- 주요 내용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 보고서 검토,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장 보고서 검토, 국제해양법재판소 예산 사항 검토,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 2명 선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부간회의 | 2024년 6월 24일 ~ 6월 26일 / 뉴욕

- 주요 내용 국가관할권 밖인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논의

로도스 아카데미 | 2024년 6월 23일 ~ 7월 12일 / 그리스 로도스섬

- 주요 내용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규범 현안 관련 강의

제75차 회기 국제법위원회 | 2024년 7월 1일 ~ 8월 2일 / 제네바

- 주요 내용 Bogdan Aurescu(루마니아) 위원 사임에 따른 신규 위원 선출, 국제법위원회 창립 75주년 기념행사, '국가 책임에 관한 국가 승계', '국제법과 관련된 해수면 상승', '해상에서의 해적 행위 및 무장강도의 예방 및 억제' 등 보고서 검토

제61차 대륙붕한계위원회 | 2024년 7월 8일 ~ 8월 23일 / 뉴욕

- 주요 내용 신규 선출된 위원회 위원의 선언, 소위원회 및 기타 보조기관에 신규 위원 임명, 부분 수정안 검토(모리셔스, 팔라우, 포르투갈, 스페인, 쿠바, 모잠비크 등 제출분), 절차 규칙 개정, 과학기술자문 위원회 위원장 보고서 등 검토

국제법평론회 국제법 캠프 | 2024년 7월 18일 /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 주요 내용 신기술과 인권 : 국제인권법 논의를 중심으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해양법

국제법평론회 하계학술대회 | 2024년 7월 19일 /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 주요 내용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해양법, 국제해양법상 주의의무와 잔존권리의 재조명